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0307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정운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허엽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14.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7가합2731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들 사이에 2017. 7.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7. 8. 28. 접수 제510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7. 8. 28. 접수 제51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추가삭제하거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요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 4면 5행의 “원고 은행에 대한”을 “피고 B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14행부터 16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4)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58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2. 18.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정식담보 미취득 부분(제1대출)만으로도 그 부실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은행의 ‘징계양정기준’과 그에 첨부된 ‘별표1-3 부실채권 변상기준’에 따라 피고 B는 제1대출에 관하여 원고 은행에 3억 원을 변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고의’ 및 불건전여신에 해당하는 제2대출 5,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B는 그 부실금액 4,8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변상금 합계 3억 4,800만 원(=3억 원+4,800만 원)을 부과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대법원 2021다2003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21. 5. 4. 확정되었다(위 판결을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결국 관련 판결에서 피고 B이 원고 은행에 3억 4,800만 원의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11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32, 33, 36, 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면 2행의 “원고 은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6면 아래에서 9행의 “피고 C는 원고 은행으로부터”를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 은행으로부터”로, 17면 1행의 “소송장급”을 “소속장급”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1면 징계사유 3행의 “재방 소재”를 “지방 소재”로, 22면 10행의 “상 개 10개 호”를 “상가 10개 호”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및 보충판단

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제2대출은 중기업심사부 심사반 합의체에서 승인된 대출로 원고 은행의 규정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의 대출업무는 원고 은행의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원고 은행의 내부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 B은 각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제1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제2대출 또한 E의 대표이사의 보증을 기초로 중기업심사부 심사반 합의체에서 승인된 것이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③ 피고 B에 대한 징계는 원고 은행의 검사실장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원고 은행의 징계양정 기준 제6조 제1항은 징계조치와 별도로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 변상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제1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제2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의 고의를 각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갑 제27, 32, 33호증, 을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이 자기자금으로 기계대금을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 담보로 취득한 기계에 대하여 담보물표식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 정식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동산을 취득한 잘못(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담보를 취득한 잘못)은 원고 은행의 여신업무지침, 여신업무매뉴얼 유의사항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어도 중과실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9 내지 74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대출은 면책 특례 대상 대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금융위원회는 2020. 6. 8. 제1대출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책 특례 대상 대출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 은행은 제1대출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을 제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0. 5. 18.

금융위원회에 '제1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목적물이 장소 이동으로 일시 미가동 사실 등의 사유로 대출 취급에 대한 면책에서 제외 되는지'를 질의하는 취지의 '면책특례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0. 6. 8. 피고 B에게 'A은행 동산담보대출 업무매뉴얼에 따른 동산담보대출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12호, 2020. 4. 16. 시행,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의2(1) 제1항 제2호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을 제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회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중과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변상금부과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된다(제2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 사이에 적용될 뿐, 금융기관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 B은 위 면책특례 대상 확인 신청서의 '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상세내용'란에 제1대출의 경위와 내용, 원고 은행의 동산담보 여신업무매뉴얼 내용 등을 기재하면서 'E의 사정으로 일시 기계 미가동 등을 이유로 제1대출 취급자에게 면책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질의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그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은 그 소명자료로 제1대출과 관련된 근담보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여신승인신청서, A은행 동산담보대출 업무매뉴얼,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였을 뿐, 제1대출과 관련된 징계사유 등의 자료를 첨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 B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융위원회의 위와 같은 회신은 제1대출과 같이 기계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이 이 사건 규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③ 금융위원회의 회신 내용에는 원고 은행과 피고 B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위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 은행이 제1대출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징계나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규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는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제1호),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제2호)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제1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원고 은행의 여신업무지침, 여신업무매뉴얼 유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결국 제1대출 자체가 이 사건 규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잘못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은행이 이를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다. 피고 B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8. 12. 12. 원고 은행에 복직하였고, 다시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2018. 12. 14. 원고 은행으로부터 특별퇴직금 433,246,153원의 지급통보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8. 12. 14.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216,623,076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5호증, 을 제66,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은 매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기간 내에 특별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점에 공고된 산정방식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전직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직 지원 제도는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년 특별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특별퇴직금이 433,246,1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은 2018년에 특별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퇴직금액이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5, 2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자를 특별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9. 3.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년 이후에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구, 판사 홍지영, 판사 김영훈

1) 2020. 4. 16. 신설된 조문이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